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2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3가합74313 증권관련집단소송

분배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분배계획안을 인가한다.

이 유

분배관리인이 2021. 5. 11. 제출한 분배계획안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인정되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1. 5. 27.

재판장	판사	오덕식	
	판사	명선아	
	판사	이유섭	